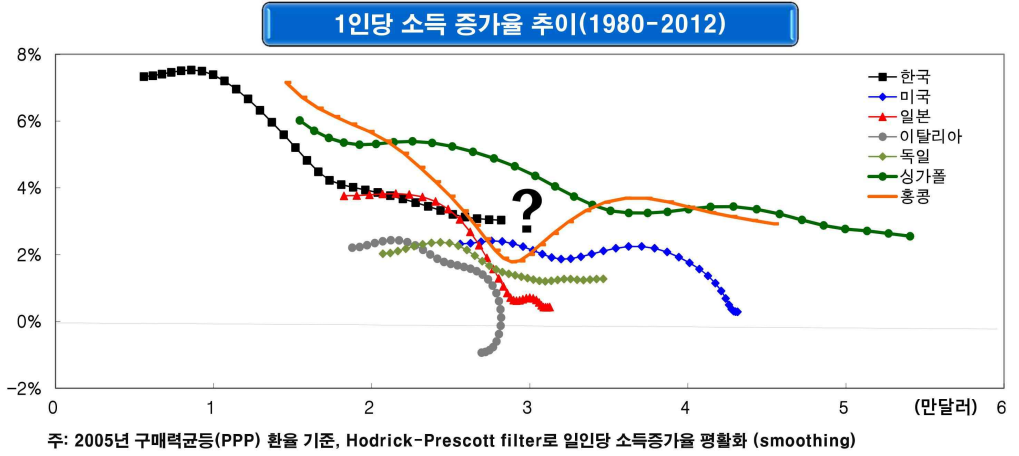


41 **기रो에 선 한국 경제**

- ▶ 일본, 이탈리아 사례에서 시사하듯이, 향후 한국의 성장경로는 **혁신과 구조개혁**을 통한 성장동력 회복여부에 달려 있음
 - KDI 일반대상 서베이 (주관식): **혁신**을 가로 막는 최대 걸림들은? **정치 (15%), 부정부패 (11%), 대기업 (불공정행위: 5%)**
 - * 기득권층의 지대추구가 우리 사회의 불공정, 비효율을 초래함을 시사



42 **개혁과제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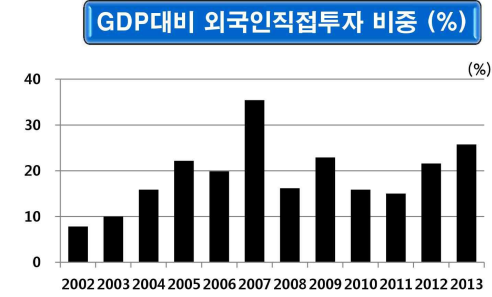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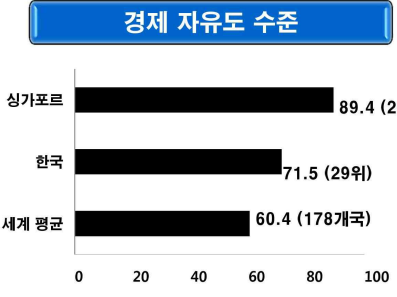
- ▶ **성장동력 복원과 사회통합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**
 - 정부개혁, **규제개혁**, 법률·의료 등 서비스 시장 개방
 -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선
 - * **연공서열의 경직적 임금체계** ⇒ 직무 및 성과급제로 전환
 - 교육개혁: 교수법을 주입식 교육으로 부터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시키는 프로젝트 중심 교육 (PBL: Project-based Learning)으로 전환하여 **기업가 정신을 (창의 + 인성 + 긍정) 복원**
 - * PBL은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창의적/비판적 사고와 협동/소통능력 (4C: **C**reative/**C**ritical thinking, **C**ollaboration, **C**ommunication) 을 통해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
 - 조선업 등의 부실기업 구조조정
 - * 대외요건 악화(금리상승, 중국 경기 하락 등)에 부실기업에 대한 先구조조정으로 위기대응력을 강화할 필요
 - 고령친화산업과 新산업 육성 전략을 연계
 - * IT기반 의료산업 발전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중국 의료시장 선점
 - 재정 지출의 내실화/생산적 재배분 추진

43 **□ 규제개혁은 한국 사회의 win-win을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**

- ▶ **규제상태에 대한 정밀진단과 함께 규제 개혁 실천시,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은 복원 가능**
 - <참고> 싱가포르의 규제개혁 성공사례, 한국의 1960년대 증반 규제개혁 성공사례
- ▶ **만약 규제개혁 부재로 성장동력이 약화될 경우, 한국은 제로섬 사회가 되어 과도한 형평 요구에 매몰, **경제하려는 의지** 보다 **나누려는 의지**가 커져 성장동력이 소멸되는 악순환에 처할 우려**
 - **Zero sum 사회**: 低성장의 경제에서는 특정인의 富의 증가가 다른 사람의 富의 손실로 귀결
 - **Positive sum 사회**: **경제하려는 의지**가 함양되고 성장의 과실이 선순환 궤도를 이룰 수 있음.

44 **<참고> 싱가포르 규제개혁을 통한 구조조정 성공사례**

- ▶ **싱가포르는 80년대 말 중국의 추격에 따른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, **규제개혁**을 통한 高부가가치 제조업 육성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정책 추진**
 - 금융, 물류, 교육, 의로서비스 부문의 hub화 기치하에 규제개혁 추진.
 - * GDP 대비 서비스산업 비중: 65%, 서비스산업 고용비중 : 80%
 - 무역정책, 정부재정, 정부의 경제 개입 등을 기준으로 측정한 경제자유도 수준이 높아 외국인투자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음.
 - * 외국인 직접투자(FDI)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도 견실히 유지됨.



자료: The Heritage Foundation and The Wall Street Journal (2014), Index of Economic Freedom 자료: SingStat

<참고> 1960년대 중반의 한국의 규제개혁 조치

45

▶ 60년대 중반의 규제개혁 조치(환율제도 개혁, 환율 및 금리 현실화, 수입자유화 등)는 한국 경제가 **시장경제체제**로 이행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려는 조치. 당시 정부(장기영 EPB 부총리: 컴퓨터 달린 불도저)는 많은 저항에도 불구하고 개혁 실천. → 경제성장의 선순환 궤도 진입

- 복수환율제도를 단일 변동환율제도로 전환. 환율을 대폭 인상하여 현실화. 수입자유화 정책 추진으로 자동수입품목 비중이 1964년 0%에서 1965년 63%로 대폭 증가. 수입승인 방식을 포지티브 리스트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
- 당시 개혁에 재계 및 정치권의 반대의 목소리가 컸음. 환율을 올리면 수입업자가 반대하고, 금리를 올리면 돈 많이 쓰는 기업들이 반대하고, 관세를 내리고 수입을 자유화하면 수입규제나 관세장벽으로 보호받던 국내생산업자가 반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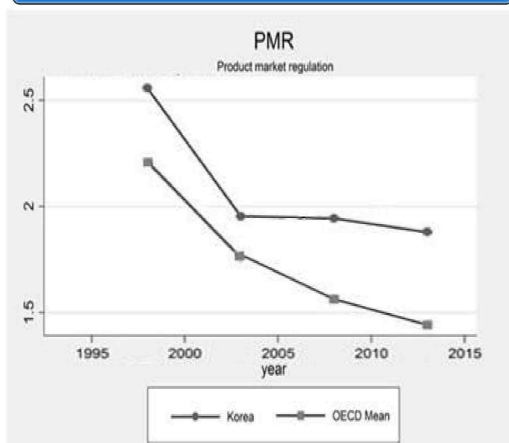
<참고> 높은 규제에 의한 투자 및 고용 부진

4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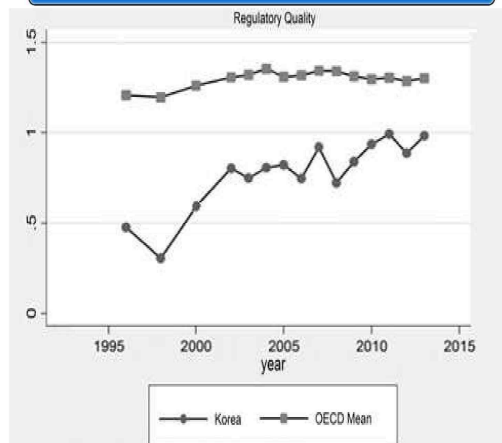
▶ 한국은 투자 여력은 있지만 높은 규제에 의하여 투자 여건 미흡

- 상품시장 규제 10% 감축시, 선진국은 1.2%, 개도국은 1.7% GDP 증가 (OECD 2015)
- 한국의 규제의 질을 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할 경우, 1인당 GDP 2% 내외 증가 (KDI 김정욱, 2015)

상품시장의 규제 (PMR): 한국 vs. OECD



규제의 질: 한국 vs. OECD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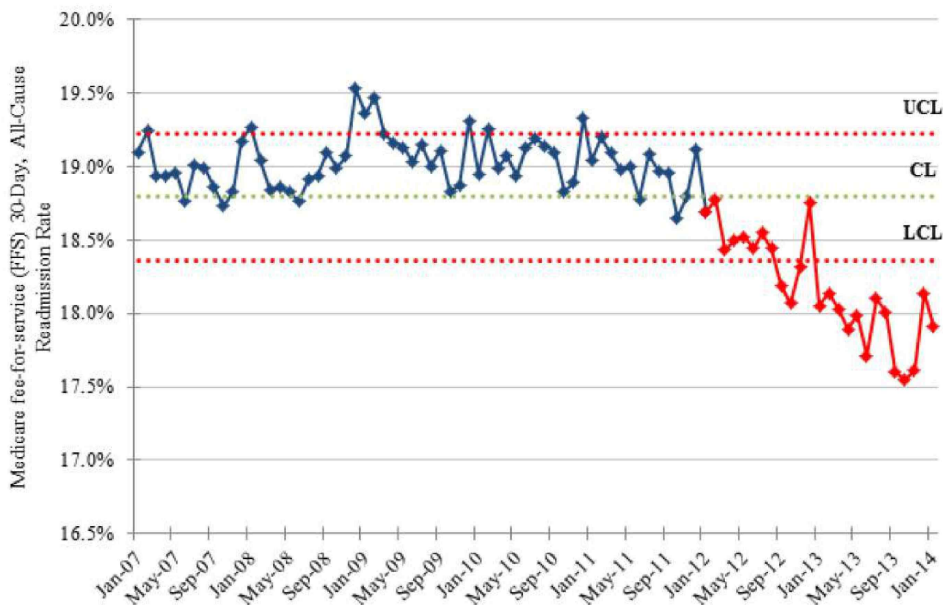
<참고>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 (Obama care) ⁴⁷

▶ 미국은 2010년부터 Obama Care 하에 체계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선진화하고 **新산업 창출**

- 오바마 정부는 의료비용을 절감하고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 의료보험 개혁을 통해 병원간 진료기록 공유를 추진.
- 1단계로 전국의 병원을 대상으로 **표준화된 EMR (Electronic Medical Record) 시스템 도입을 권장하고,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을 성과지표로 설정, 목표 달성 시 강력한 인센티브를 진료수가에 반영.**
 - * 표준화된 EMR을 도입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 penalty를 부과
- 2단계로 타 병원과 **진료정보를 공유하는 병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진료수가에 반영.**
- 궁극적으로 IT기술을 활용해 표준화된 EMR에 축적된 진료정보와 개인의 생체 정보가 결합된 **PHR(Personalized Health Record) 시스템 확산**을 추진.
 - * 표준화된 전산시스템 구축과 진료정보 공유 확대는 최근 구글과 애플의 wearable 건강 기기 등 **新산업 창출**을 촉진하는 데 기여
-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 결과, 환자들의 30일내 재입원율이 하락하고, **의료비용이 연간 74억달러 절감**되며, 이용자의 81%가 **의료서비스에 만족**한다고 보고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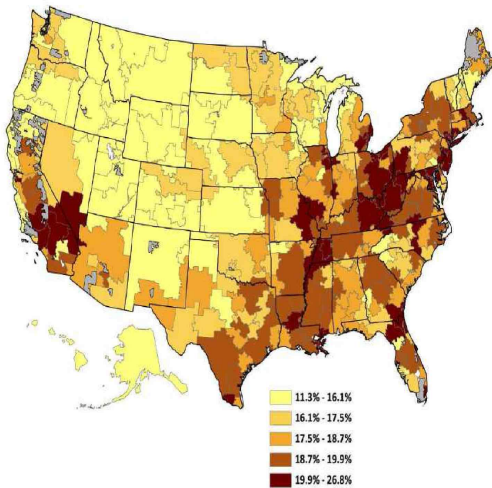
<참고>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 (Obama care) ⁴⁸

미국의 30일내 재입원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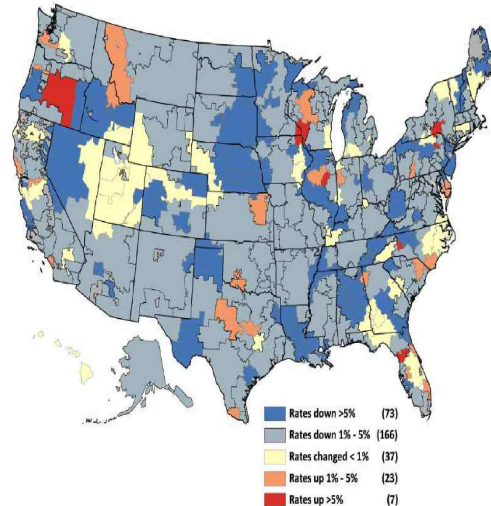


〈참고〉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 (Obama care) ⁴⁹

2011년 지역별 재입원률



2011-2012년 지역별 재입원률 변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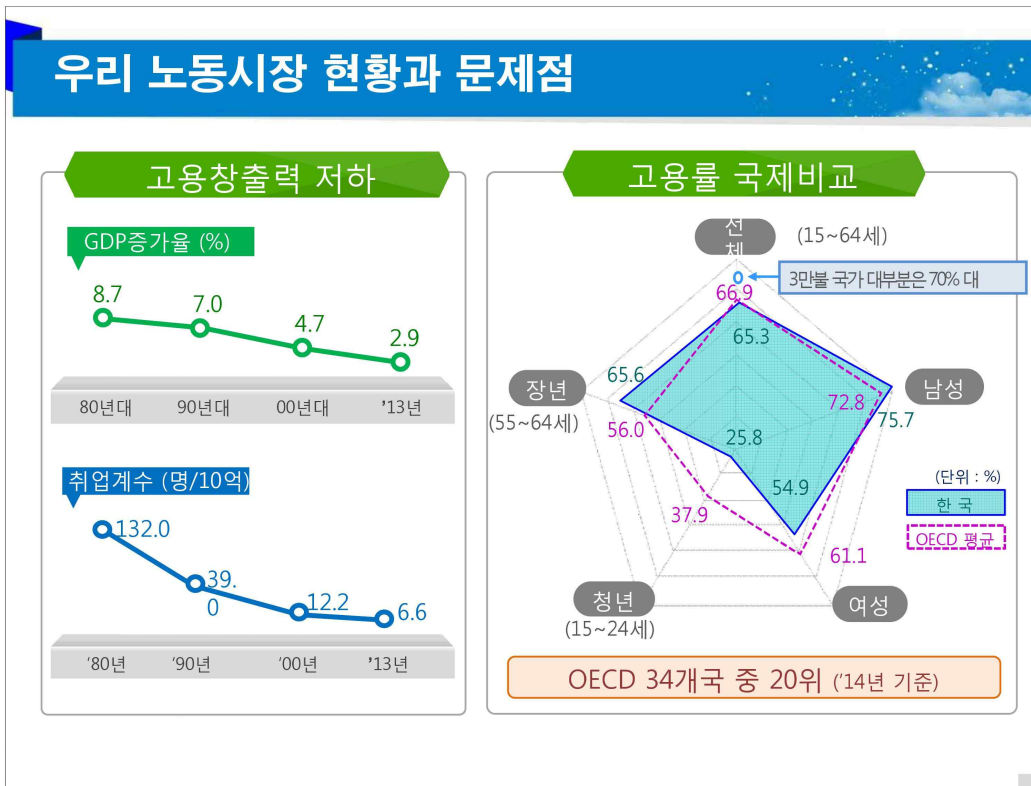
〈참고〉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의 발전 방안 ⁵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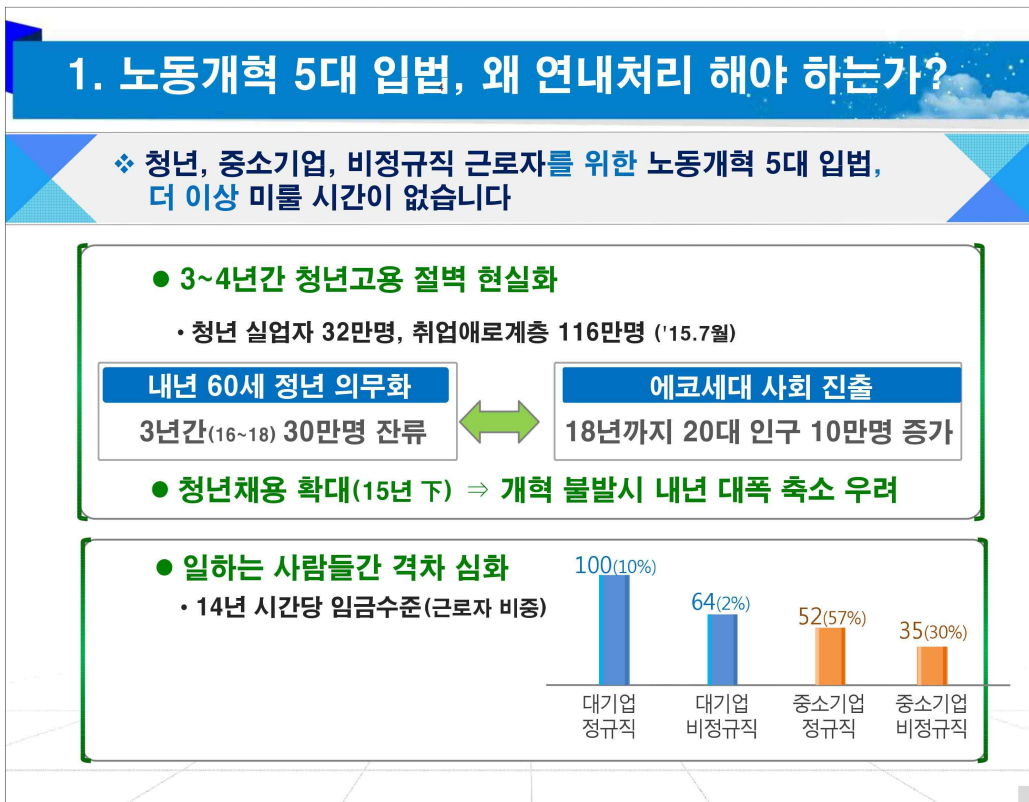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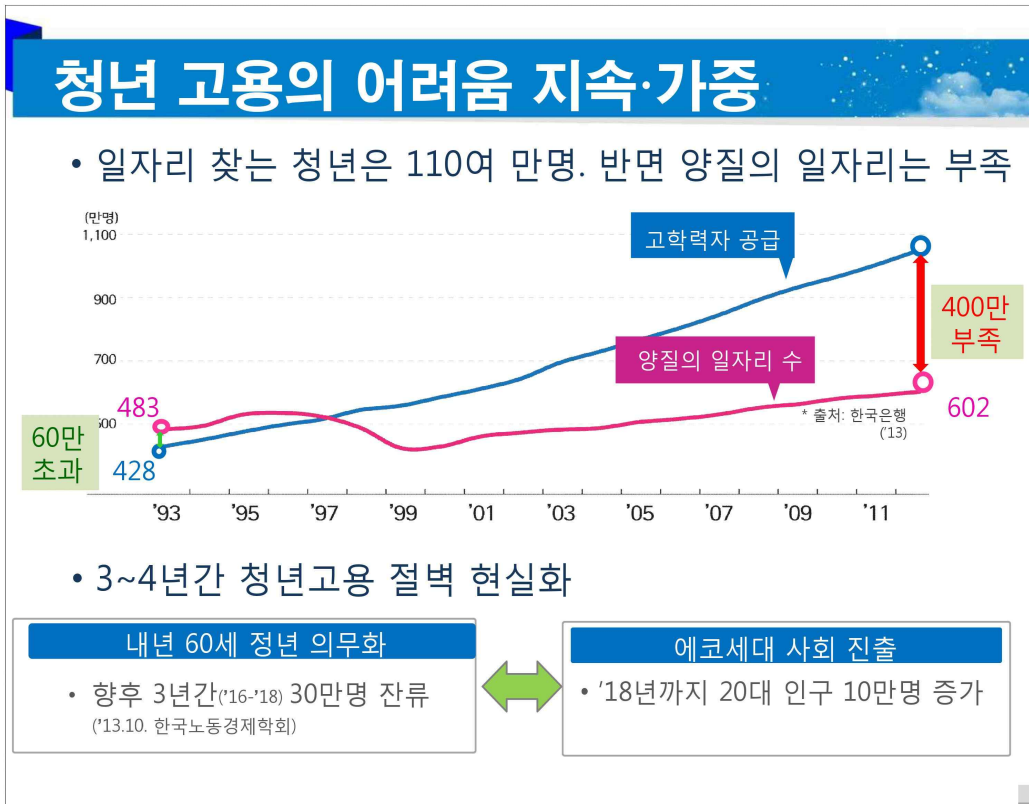
▶ 고령친화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표준화된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, 이를 기반으로 **개인의 진료정보가 안전하고도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합리적으로 공유될 수 있어야 함.**

- 우리나라는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진료정보를 전산화하였으나,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음. 예컨대, 서울대 병원과 삼성병원간의 전산시스템이 상이하여 정보 공유가 불가능.
 - * 혁신을 거부하는 이해당사자들의 이권다툼도 정보공유의 큰 걸림돌
- 복지부, 미래부, 산업부,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장기적인 비전을 공유하고, 정책 협조를 통해 의료인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확립해야 함.
-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진료기록을 비롯한 개인의 건강정보만 저장하는 (기존의 주민등록번호화는 별도의) 식별체계를 도입하여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함. (PHR 시스템 도입)
 - * 프랑스, 독일, 벨기에, 이탈리아 등 유럽국가와 대만의 경우 혁신적 정책 (예: 환자와 의사, 병원이 동시에 인증해야 개인정보가 열람되는 3중 보안 시스템)으로 PHR 시스템 실현.
- IT를 기반으로 한 진료서비스 선진화는 대내적으로 신산업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, 대외적으로 고령친화산업 수요가 급증하는 **중국 의료시장에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것임.**

노동개혁 5대 입법

이 재 홍 (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)







(1) 근로기준법

법안 주요내용

- **통상임금:** 정의, 제외금품 기준 명확화 (대타협 내용 반영)
- **근로시간:** 휴일근로 연장근로 한도 포함(4단계 시행), 특별연장근로 한시 허용
연장휴일근로 할증률(8시간 이내 통상임금 50% 이상, 8시간 초과 100%)
- **특례업종 축소(26 → 10개),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(2주 → 1개월, 3개월 → 6개월)**

· 단계적 시행은 대타협 합의사항

- 주52시간 초과 근로자 105만명(중소기업 종사자 87.6%) → 임금 감소 우려
 - * 즉시 시행시 임금총액 18.0%(월 49만원) 감소
- 과거 주 40시간제 도입시 6단계 시행(04~11년) → 임금감소 없이 실근로시간 단축
 - * 연장근로한도 연장 주 12 → 16시간(3년간 한시), 최초 4시간 할증률 인하(50 → 25%)

· 할증률 기준은 대법원 판례(90다6545) 및 행정해석 반영

- ILO(25%), 일본(연장 25%, 휴일 35%, 중복지급 없음)

(2)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(비정규직 고용안정법)

법안 주요내용

- 생명안전 핵심업무 사용 금지, 쪼개기 계약 제한(2년 내 3회)
- 예외적 기간연장 허용(2+2): 35세 이상 본인 직접 신청 + 이직수당 지급
(공익위원안 추가요건: 근로자대표 서면동의 + 퇴직급여 지급)

• 기간제 규모 축소

- 기간제 규제강화(생명안전), 정규직 대비 고용비용 상승(이직수당, 퇴직급여)
→ 인건비 절감 목적의 기간제 사용유인 축소
- 정규직 전환률 제고(중장기적 규모 축소)

• 정규직 전환 촉진

- 35~54세 기간제(78만명) → 정규직 전환률 9.2% (15~34세 20.2%)
- 근속기간이 길수록 정규직 전환률 증가, 임금도 상승(1년 증가시 2.7%)
* 1.5년 미만 10% → 2년 미만 16.2% → 2년 이상 24.3%
- 정규직 전환의 관건은 숙련형성(OECD, 금재호 교수)

(3) 파견 근로자 보호법(중장년일자리법)

법안 주요내용

- 생명안전 핵심업무 파견 제한, 파견대가 항목 구체적 명시
- 제한적 파견확대: 고령자, 고소득 전문직, 뿌리산업(금형 등 6개 업종)
* 독일, 일본, 미국,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 파견 전면 허용

• 고용창출 + 고용구조 개선

- 파견대상 확대는 신규 고용창출 효과 (이정민, 남성일, 변양규 등)
- 금번 법 개정으로 17,800명 정도 파견규모 증가(전 근로자의 0.1%)
- 이 중 40%는 신규 고용창출, 60%는 용역 등에서 이동 (고용의 질 개선)
* 파견근로는 용역근로 대비 임금 14% 높고, 사회보험 적용률 훨씬 높음

• 뿌리산업: 인력난 완화 + 고용안정

- (뿌리산업 부족인력규모) 2.8만명 ('14년 연구용역)
- 공익위원안에 따라 상용형 파견 도입시 고용안정 확보 (파견업체 소속 정규직)

(4) 고용보험법

법안 주요내용

- **실업급여 확대:** 기간 연장(90~240일→120~270일)
수준 인상(평균임금의 50→60%)
- **수급요건 조정:** 180일(이직전 18개월 기준) 기여→270일(24개월 기준)
- **구직급여 하한액:** 최저임금의 90→80% 조정

• 수급요건 조정은 보장성 강화에 따른 최소한의 보완장치

- 현행 수급요건은 OECD 중 가장 관대(독일, 스위스 등 기여기간 12개월)
- 보장성 강화로 반복수급자·급증 등 도덕적 해이 예방 필요
* 180일 기여, 90일 수급 반복 → 미조정시 120일 수급

• 현행 하한액 기준은 최저임금을 상회

- 구직급여 월 하한액 1,302,480원 > 월 최저임금 1,260,270원 ('16년 기준)
- 최저임금 적용 수급자의 재취업 유인 저해 (구직급여 > 근로시 임금)

(5) 산재보험법

법안 주요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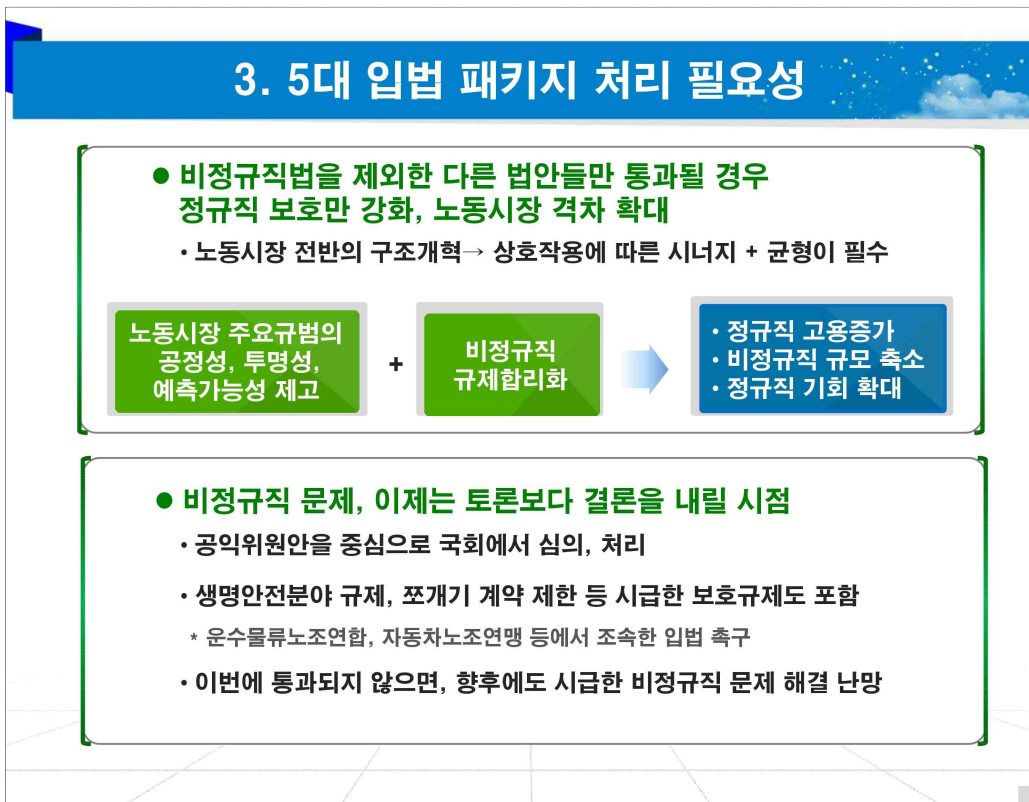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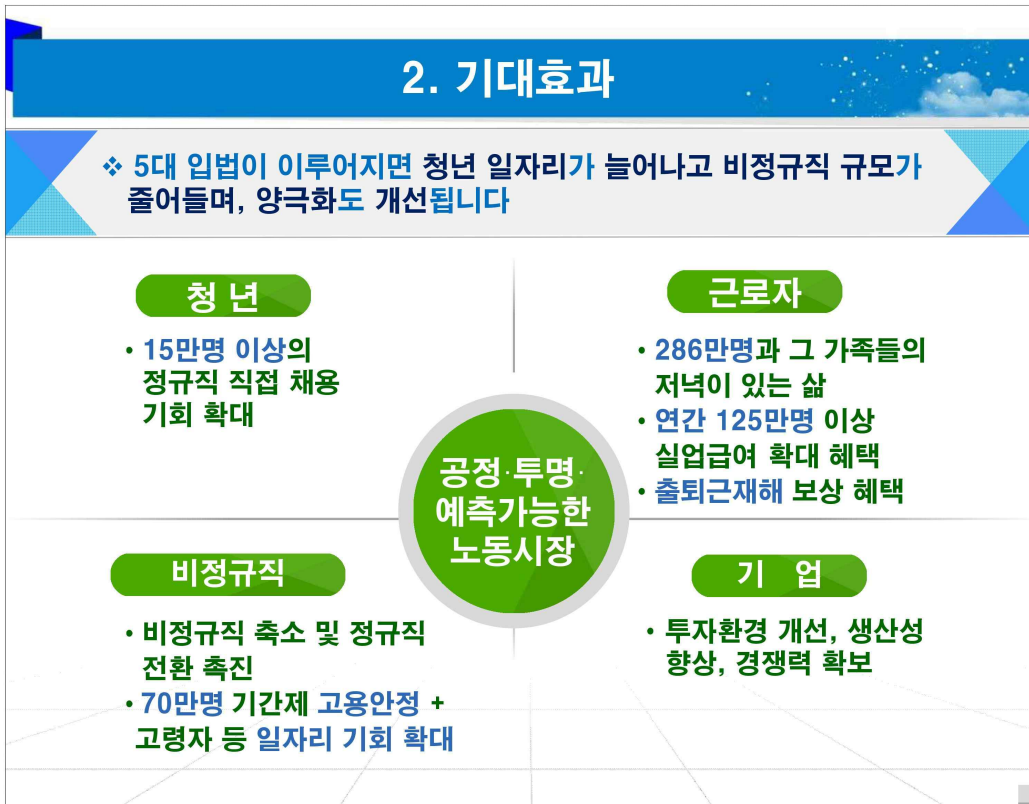
- **출퇴근재해 보상 도입:** 단계적 시행(17년 도보, 대중교통, 18년 자동차)
- **자동차보험 우선 적용, 근로자 종과실 보험급여 일부 제한**

• 세부 실행방안 정비 필요 ⇒ 단계적 시행

- 재정추계, 요율체계 정비 등
- 자동차보험 우선 적용에 따른 보상절차, 구상권 행사 등 관련 제도 정비

• 근로자 종과실에 따른 급여제한 필요성

- 출퇴근재해는 사업장 위험영역 밖에서 발생하는 재해
- 다른 산재와 동일하게 무과실책임 적용 곤란(도덕적 해이, 형평성 문제 대두)
* 공무원도 종과실시 장애, 유족급여 1/2 제한



4. 이제는 국회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

● 5대 입법 임시국회 처리 합의가 이행되어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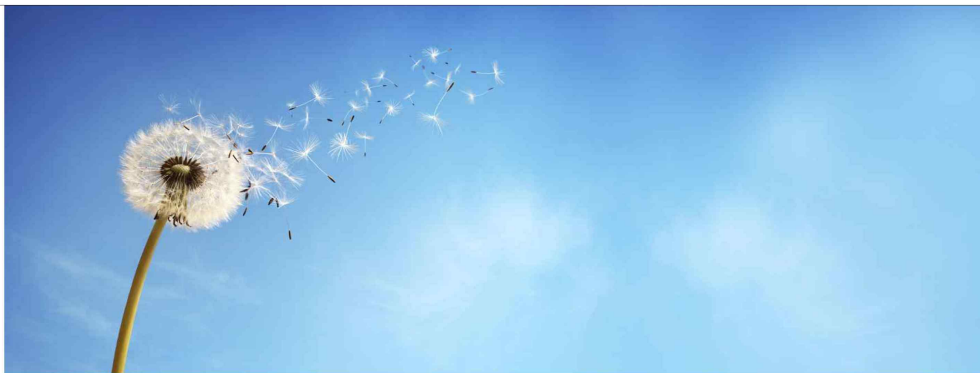
- * 국민의 54.9% 노동개혁 찬성, 31.9% 반대(바른사회시민회의, 15.8월)
- * 국민의 52.8% 노동개혁 5대 법안 정기국회 입법 찬성, 14.2% 반대(동아, 15.11월)
- * 국민의 77.9%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현행보다 완화 찬성, 22.1% 반대(동아, 15.11월)

● 한중 FTA와 경제활성화법 일부 타결 효과 극대화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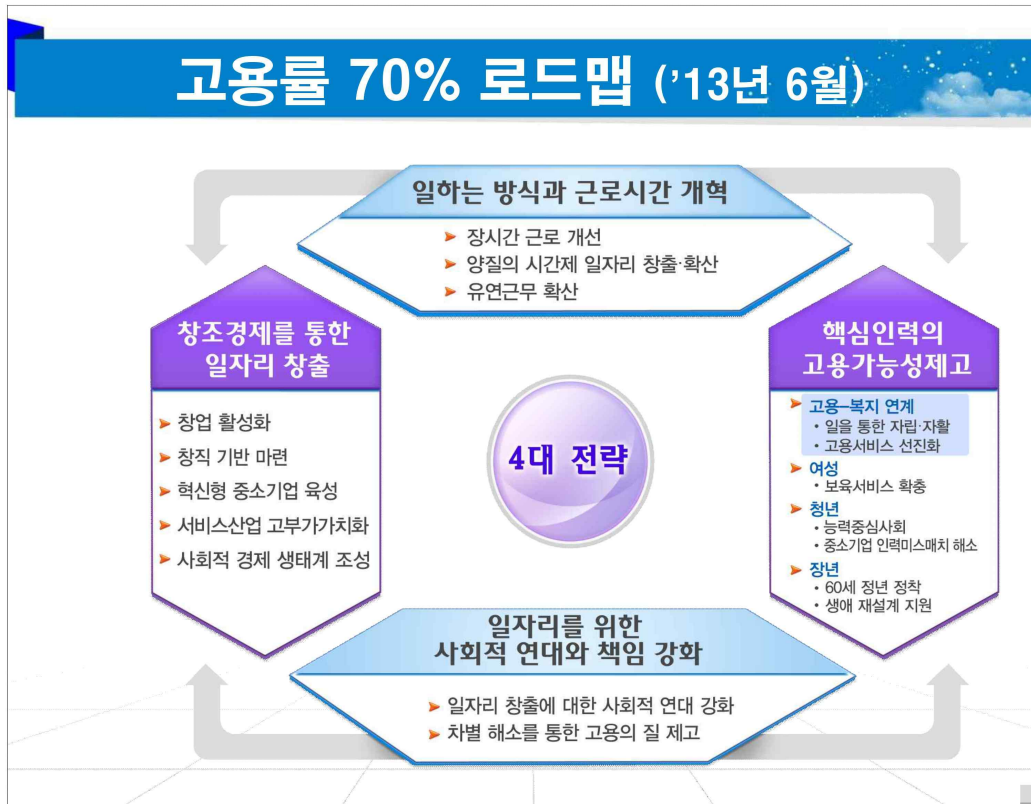
- 노동개혁 5대 입법을 통해 제대로 "일자리 창출"로 이어지고 "더 나은 일자리"로 채워지도록 해야 함

● 가장 쟁점인 비정규직법도 노사정위 논의 종결

- ⇒ 논의결과(노사정 입장 + 공익위원안) 국회 제출



일자리 창출과 정책과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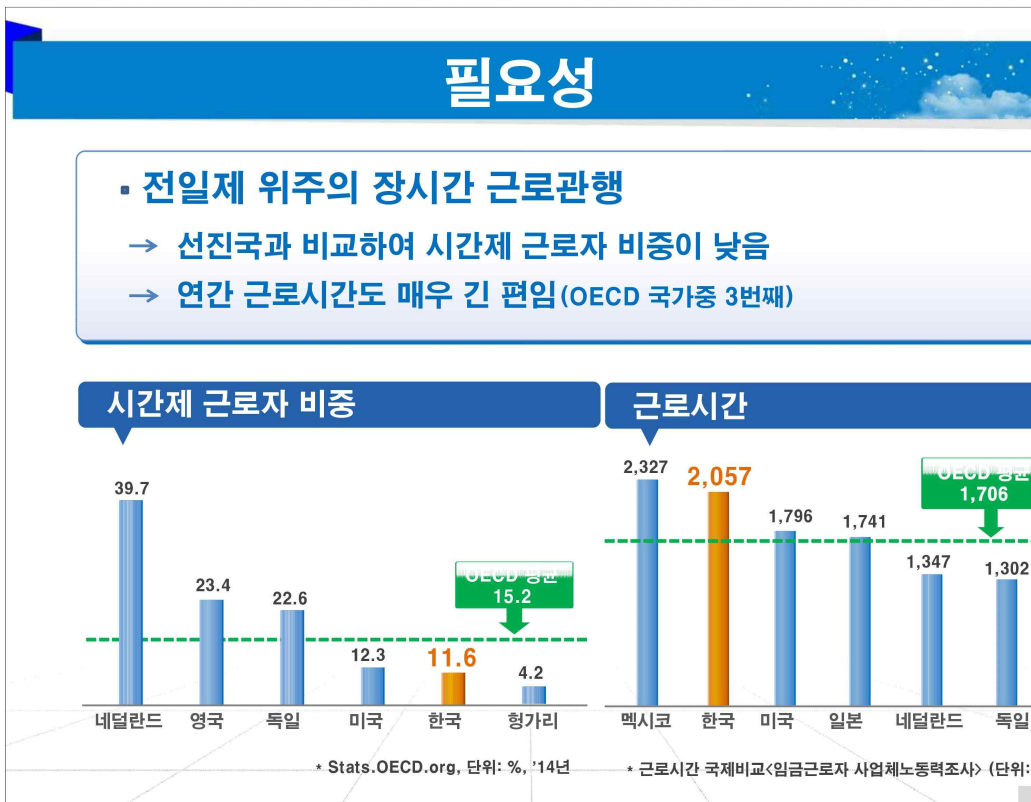
한국형 듀얼시스템

일학습 병행제

“The Best Way to Learn is to Do.”

“ The White-house Summit
on American Apprenticeship ”





정보를 한눈에
서비스를 한곳에서
고객별 맞춤형으로
일자리와 복지, 한곳에서 편리하게

고용복지플러스센터

고용복지+ 센터 확대

설치 이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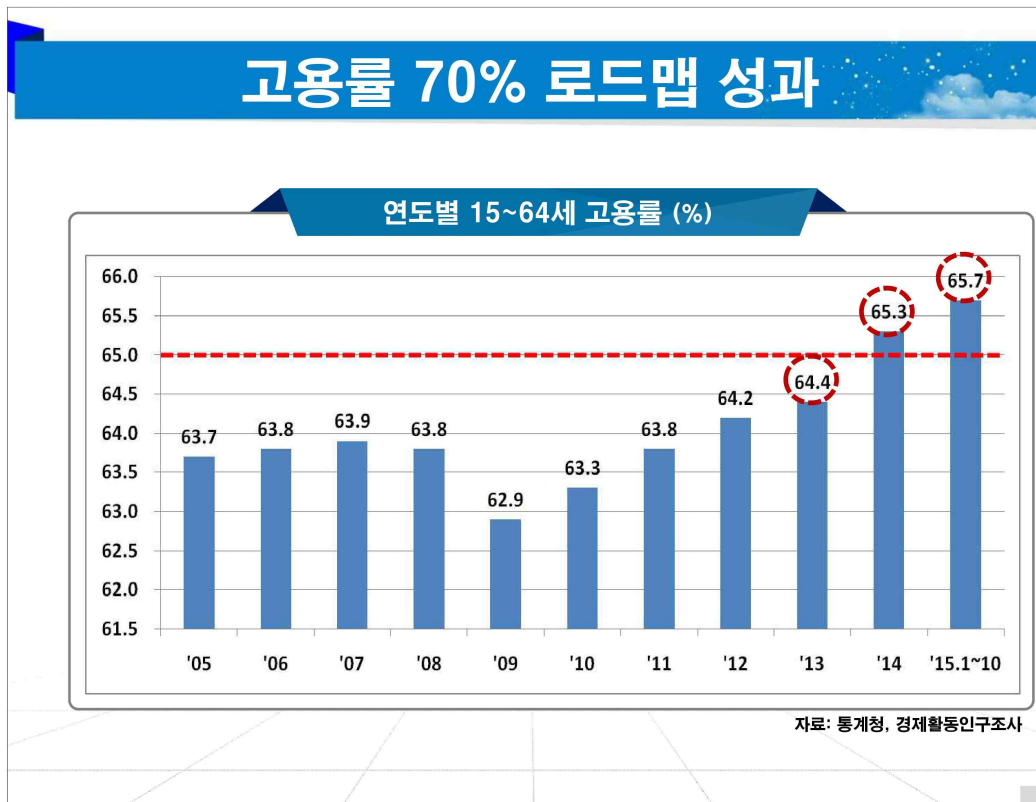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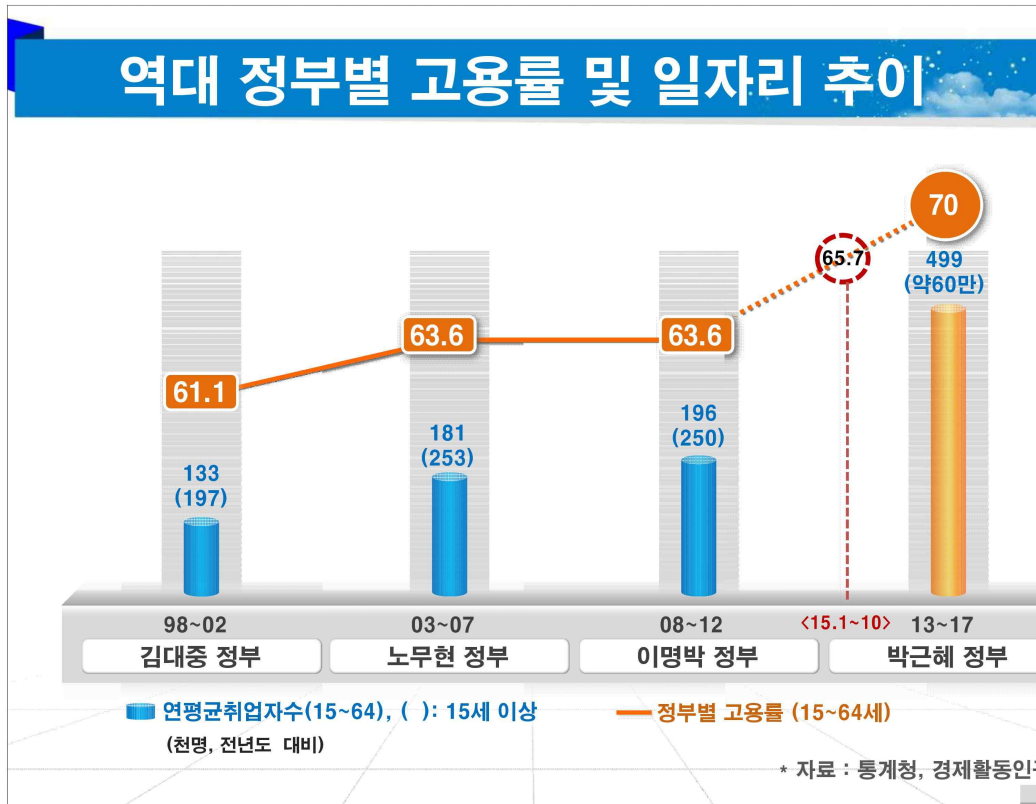
• 각각 방문 → 시간·비용↑, 한가지 애로 해결

설치 이후

• 한번 방문 → 시간·비용↓, 복합 애로 해결

7.6% **취업성과 전국평균**

32.1% **고용복지+센터**





노동시장의 세계화 (인터넷)

단순·중간 지식 노동 ⇒ 인터넷 대체, 해외 이

- oDesk (2003년 설립된 온라인 노동시장)
 - : 150개국 30만개 이상 기업과 160만 명의 프리랜서 구직자가 연결
 - ⇒ 프로그래머, 카피라이터 등 중간수준 사무직 일자리 국외 이동

중간수준의 Transactional 일자리까지 이동

(The Economist, '11.9.)

Developed market → Developing market

Transformational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Physical activityEx) construction Loser	Transactional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Routine jobAutomated possibleEx) call center or banks	Interactional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relying on knowledge, expertise and collaborationEx) IB, consulting Winner
---	--	---

미래 일자리와 기술혁신

로봇기자

Quakebot, the LA Times earthquake reporter

An Earthquake hit Los Angeles on the 17th March at 6:21am and eight minutes later the story was reported on the L.A. Times by a first reporter and reader. Quakebot created Quakebot that takes information from the USGS Earthquake Notification Service and turns anything over a 3.0 magnitude into a readable story with a map and headline, queries and ready for publishing on.

1990년 1월1일 1000달러를 투자 했을때
(단위: 달러) 자료: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스

시이먼스의 메달리온 펀드

시스템 트레이딩

매년 25%의 수익률을 보일때 (15년 후)

amazon.com

무인택배

Google

옥스포드대 칼프레이 & 마이클 오스본

자동화와 기술발전으로 20년 이내 미국의 일자리 중 47% 가량이 사라질 것 (2013, 「고용의 미래」)

Vs.

미국 노동부(DOL)

10년 후 세상의 직업 중 약 65%는 지금껏 한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

노동시장의 미래는?

2012년
린다 그랜튼

2013년
짐 클리프턴

1996년
제레미 리프킨

「일의 미래」 ⇒ 10년 후, 나와 우리아이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?

‘난 기자가 되고 싶어’ 라는 아이의 말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던 자신을 발견하고는 이 책을 썼다.

「일자리 전쟁」 ⇒ 3차 대전은 일자리 전쟁이 될 것이다.

6년간 갤럽조사 결과 밝혀진 진실
“전 세계 70억 인구가 원하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다.”

감사합니다

